

의안번호	제547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10월 17일 (제324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9월 27일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7
----------	-----

발의연월일 : 2013년 9월 27일

발 의 자 : 윤성옥 · 정현 · 황규철 · 권기수 ·

김도경 · 유완백 · 이수완 의원 (7명)

## 1. 제안 이유

-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농민단체 명칭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농업인단체 명칭 변경(충청북도 생활개선회→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2조)
-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다. 현실에 맞게 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등)

##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별첨 :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 충청북도 4-H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단서 중 “충북4H본부”를 각각 “충북4-H본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농산지원과장

제6조제3호 중 “3년마다 1회이상”을 “매년”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7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 충청북도 4-H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업 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p>	<p>제2조(기금의 용도)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 충청북도 4-H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충청북도 4-H 연합회의 기금운용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u>충북4H본부</u> 에서 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 ① ----- ----- ----- ----- ----- <u>충북4-H본부</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생 략)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부장,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장, 농산지원과장 2.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 지원기획과장,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농산지원과장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3년마다 1회이상</u> 실시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u>매년</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p><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u></p> <p>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p> <p>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 ~ 제12조(생략)</p>	<p>제8조 ~ 제12조(현행과 같음)</p>
<p>제13조(회계관리) ① ~ ② (생략)</p> <p>③ 운용기금 관리는 각 단체별 회장 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대장과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 충청북도 4-H 연합회는 <u>충북4H 본부</u>에서 한다.</p>	<p>제13조(회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u>충북4-H</u> <u>본부</u>-----.</p>

## 관 계 법령

###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